

의안번호	2208443
의 퇴 인	김재원의원
회 답 일	2025.3.13.
추계번호	25D0651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억 3,000만원, 2031년 11억 2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3억 6,300만원(연평균 10억 7,3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헌법 및 계엄법 교육 실시 (안 제22조제4항)	1,030	1,045	1,076	1,091	1,121	5,363	1,073

주: 1. 헌법 및 계엄법 교육 실시(안 제22조제4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3. 본 추계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서 303개소에서 헌법 3시간, 계엄법 3시간으로 총 6시간의 교육을 연간 5회(1회당 100~120명 수강)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2항 (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) 신설	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등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2조제4항 (교육훈련) 신설	경찰청장 등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, 경위급 이상은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0조제2항 (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) 신설	X	시험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등으로 시험관리 측면에서 증가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2	안 제22조제4항 (교육훈련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서 303개소에서 연간 5회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경찰공무원의 인력 규모(2023년 말 기준 144,337명)를 고려하였을 때,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관서 303개소¹⁾의 대강당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회당 100~120명을 교육한다면 연간 5회²⁾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 - 개정안에서는 경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, 본 추계에서는 계급의 구분 없이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지구대, 파출소 등 제외을 제외한 경찰청 및 경찰관서 277개소,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26개소를 말함
 2) 추계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은 2027년 15만명, 2031년 16만 3,000명으로 추정되고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실시하려면 303개소의 관서에서 회당 100~120명을 대상으로 연간 5회(=15만명÷303개소÷100명)를 실시하여야 함
 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서 303개소에서 연간 5회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연간 교육횟수, 1회당 강사료를 곱하여 산출
 - (교육횟수) 매년 1,515회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 실시
 -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서 303개소에서 연간 5회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총 1,515회(=303개소×5회)
 - (1회당 강사료) 2027년 68만원, 2031년 74만원으로 추정
 - 헌법 및 계엄법 교육 1회당 강사 2명이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1회당 강사료는 2025년 기준 64만원(=강사 2명×32만원⁴⁾)
 - 1회당 강사료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2] 1회당 강사료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1회당 강사료	68	69	71	72	7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경찰공무원에게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0억 3,000만원, 2031년 11억 2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3억 6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헌법 및 계엄법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교육횟수(a, 회)	1,515	1,515	1,515	1,515	1,515	—
1회당 강사료(b, 만원)	68	69	71	72	74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1,030	1,045	1,076	1,091	1,121	5,36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경찰청에 따르면, 전문분야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는 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」 별표6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, 강사(전·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) 1명당 3시간 강의시 강사료는 2025년 기준 32만원으로 추정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,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서 303개소에서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연간 5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